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45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3. 14.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 ~ 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 ~ 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 ~ 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나. 이 사건 병원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이 사건 병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907)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7. 9. 29. "이 사건 병원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그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병원에게 부과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8. 8. 8.부터 2018. 8. 14.까지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주민세(법인균등분) 93,750원, 주민세(재산분) 5,677,460원, 주민세(종업원분) 101,287,420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13,306,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이고, 원고는 [redacted]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redacted]시이거나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 29.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redacted]시는 치매 및 노인 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목적으로 [redacted]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부산 북구 C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2005. 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
>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관리규정은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근무체제, 비상재난(화제 등) 대책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병원을 동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9조(회계운영)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redacted]시는 2005. 2.경 이 사건 병원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위탁기간 만료된 후 순차적인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4) [redacted]시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위탁계약 당시(2005. 2.) 및 재계약 당시(2014. 2. 1., 위탁기간: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작성된 각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부산광역시가 치매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 등을 위하여 설치한 이 사건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치매 및 노인질환 관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토록 한다.
1.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
② 부산광역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재산(시설, 장비, 비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D(면적: 6,053㎡)
2. 시설물: 철근 콘크리트조, 연면적 5,489.76㎡(지하1층, 지상 4층)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원고는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리에 책임을 진다.

제7조(운영비 등)

① 원고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기준 및 장비 등)

①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관하여 연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병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 5, 9호,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주민세 중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은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 납부의무가 있고,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위 각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경우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방자치단체인 [redacted]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병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인 [redacted]시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거나 원고가 [redacted]시로부터 위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주민세 등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재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운영에 관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운영은 독립된 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병원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료비 등 병원수입은 원고 법인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redacted]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관하여 연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redacted]시에게는 연1회 사후적 감독만이 가능할 뿐인바, 이는 원고와 부산광역시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병원운영에 관한 독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시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에 관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등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정진화

판사 박근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별지1

부과처분내역

과세일자	세목	과세기간(년)	부과세액(원)
2018. 8. 8.	주민세(법인균등분)	2018	75,000
	지방교육세	2018	18,750
	소계		93,750
2018. 8. 10.	주민세(재산분)	2014	2,163,230
	〃	2015	2,018,910
	〃	2018	1,495,320
	소계		5,677,460
2018. 8. 14	주민세(종업원분)	2013	2,143,480
	〃	2014	25,685,390
	〃	2015	21,046,520
	〃	2016	21,792,240
	〃	2017	20,639,600
	〃	2018	9,980,190
	소계		101,287,420
2018. 8. 14.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3	13,306,9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8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